

계시판

은행, 농·수·축협,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4) 신청서류

- 가) 지원신청서 (소정양식 1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
 - 나) 최근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관할 세무서장 확인본 원본)
 - 라) 기타 지원 우대조치 관련 증빙서류 (제출업체만 우대적용)
- 5) 신청서양식 및 지원대상 핵심자본재 품목 리스트 등
-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 www.eiak.org → 자금지원정보 click
- 6)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지원 우대조치(증빙서류 제출업체에 한해 적용)

- 1) 전년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결산재무제표 기준)
- 2) 기업부설연구소(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가 설치된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3) 수급기업간 개발을 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수요가 보장된 품목을 개발하는 중소기업(협약서, 약정서등)
- 4)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의 경우 공동개발에 대한 기본계획과 함께 용·자사업자별로 용·자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5)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며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 개발하는 경우(개발완료 확인서)

6)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133호, '98. 12. 31)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다. 주의사항

1) 지원 제외대상

- 동일과제로 기 지원된 개발사업
- 자금사업에 참여제한조치를 통보받고 참여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총사업기간 : 36개월 이내

4. 기타

가. 제3차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년도 제1차 사업자선정시 심의·지원하되, 사업년도내에 미활용 자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신청사업자 중 용·자사업자로 선정 지원할 수 있음

나. 자본재 시제품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국산화대상핵심자본재 품목에 80%를 지원하고, 기타 일반품목에 대하여 20%를 지원할 계획임

다.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는 일절 반환치 않음

불공정수출입행위 신고·조사 제도 안내

WTO체제이후 국내외무역시장이 개방화·자유화되면서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한 수출입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서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신고제도”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불공정수출입행위유형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저작권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행위(대외무역법제39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를 위배한 물품의 수출입행위

-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손상 및 변경한 경우
-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87조제2호·제3호)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 품질 등을 허위 또는 과장표시하여 수출입하는 행위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대외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
- 수출입과 관련하여 분쟁을 고의적으로 야기시키는 행위
- 수출입 선적서류의 허위발행, 위조, 변조 및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물품의 인수행위(대외무역법시행령제87조)

신고자격 및 방법

▼이해관계가 있는 “무역거래자, 생산업자, 관련조합·협회, 운송인 및 보험업자”는

-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주소, 성명 및 사업내용
- 피신고인의 불공정수출입행위 내용
- 불공정수출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

▼신고기한은

-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80일 이내 이거나,
-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함

제재수단

◎ 무역위원회에서 조사·판정 후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시정조치명령

- 시정조치명령에 위배할 때에는 대외무역법 제55조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과징금 부과

-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기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통관의 보류(상표권, 저작권침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무역위원회 활용시 장점

▼신고절차의 간편, 조사의 신속성

- 무역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조사 및 처리
- 법원의 소송과는 달리 신고서류 및 절차 등의 간편

▼구제효과 광범위

- 무역위원회의 구제조치는 해당품목 취급자 전

제30회 정밀기술진흥대회 안내

체에게 효과가 있음

당사자간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판 과는 달리, 무역위원회의 제재효과는 당해 물 품 취급자 모두를 규제함

▼비용의 절감효과

-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신고서류작성 및 대응가능

▼신고관련서류 비공개 처리

-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는 제출자가 원할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노출 등을 방지할 수 있음

조사신청 및 문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출입조사과
- 전화 : 02)500-2599, 2598(FAX:02)504-1213)

【불공정수출입행위 조사절차도】

불공정수출입행위 신고 또는 정보접수 (무역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이해관계인의 신고타기관의 요청 또는 직권조사 등
조사개시여부 결정 (무역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고자격, 신고기간 등 검토불공정수출입행위 인정사유 등 검토
무역위원회 안건상정 (무역조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서면조사 원칙필요시 유관기관 합동조사단구성, 현장방문, 관련서류 징구 등 병행
심의·의결 (무역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결과 심의 및 제재수준 결정무역위원회 결정사항 판계기관에 통보
제재실행 (관계행정기관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정조치명령, 과징금부과통관보류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97-63('97. 4. 20)호 정밀기술진흥사업 지침에 의거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의 후원과 전자산업진흥회 등의 추천으로 다음과 같이 매년 정밀기술진흥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다음 -

I. 정밀기술진흥대회

1. 목적

▼ 산업자원부 고시 제 97 - 63호 ('97. 4. 21)
의거

▼ 고도화산업 발전에 근간이 되고 있는 『정밀제품(설계)기술』, 『정밀생산기술』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관련업계에 보급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대회분야 및 참가대상

분야	참가내용	참가대상	비고
정밀제품 기술분야	정밀기술(가공, 조립, 설계, 합성, 분석, 측정, 제어 등)을 근간으로 하여 제품의 신기능 창출, 소형화, 다기능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실현한 개발제품 (예: 정밀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제품, 정밀전기 전자제품, 정밀광학제품, 정밀소재제품 등)	전산업체	
정밀생산 기술분야	제품개발 및 생산에 응용되는 기술 중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기술이며 각 산업의 기반기술로서 장기간의 기술축적 및 Know-How를 요하는 전문 단위기술. (예: 정밀가공기술, 정밀합성기술, 정밀제어기술 등)	전문기술보유업체, 대학 및 연구소, Working Group	

*'99년 산업 재해율이 동종업종평균 이상인 업

체는 수상대상에서 제외됨. 단, 전년('98)보다 재해율이 30%이상 감소한 업체는 무관함

3. 심사방법

- ◀ 1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한 전문소위원회에서 서류심사
- ◀ 2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 전문위원회에서 발표대회 심사
- ◀ 3차 심사 :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한 정밀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4. 심사항목

- ◀ 출품제품(기술)의 정밀설계기술, 재료 및 부품기술, 요소기술, 가공기술개발 등의 기술수준, 난이도, 자급률, 유일성, 성능 등의 기술성(80%)
- ◀ 관련 산업, 국가경쟁력, 부가가치창출 등의 상품성과 파급효과(20%)

5. 대회 일정

- 가. 개최공고 : 3월 13일
- 나. 접수기간 : ~ 4월 29일
- 다. 1차 평가 : 6월 15일 ~ 16일
- 라. 발표대회 : 6월 27일 ~ 28일
- 마. 최종심의 : 7월 19일(정밀기술심의위원회)
- 바. 시상 : 11월 중 (COEX 국제회의실)

6. 시상 내용

- ◀ 대상(대통령상) : 2업체, 우수상(국무총리상) : 2업체, 금상(산업자원부장관상) : 5업체, 은상(중소기업청장상) : 6업체, 동상(산업기술시험원소장상) : 7업체
- ◀ 유공자 표창

산업훈장 : 2명, 산업포장 : 2명, 대통령상표창 : 4명, 국무총리상표창 : 4명,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4명, 중소기업청장표창 5명 (정부 포상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 특전

- ◀ 산업기술대전 전시공간 무료 활용
- ◀ 정밀기술 등급 부여
- ◀ 산업기술시험원의 각종지원 (ISO인증, K-Mark인증 품목지정 등)
- ◀ 주요 구매기관에 우선 구매 알선

8. 주최 및 후원

- ◀ 주최 : 산업기술시험원
- ◀ 후원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한국경제신문
- ◀ 추천기관 :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한국광학기기협회,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한국전기공업진흥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가나다순)

9. 참가신청 요령

- ◀ 참가신청서 1부(별지 1호, 2호)
소속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주최기관에 제출. 단, 비회원 업체는 직접제출 가능
- ◀ 참가신청 양식은 인터넷 <http://www.ktl.re.kr>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다운로드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과정 이외에는 비공개
- ※ 문의 : 산업기술시험원 표준계측센터 기계계측팀(Tel. 8601-510, 506, 507, 508)

게시판

2000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제2차 융자사업계획 공고

2000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제2차 융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선도기술개발보급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출연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기술이전을 통하여거나, 자체적으로 산업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 * 산업적 연구 및 경쟁전단계 개발안 지원
- 국가적으로 시급히 확보되어야 하나 투자규모가 커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술개발

나. 지원규모 : 1,200억원

구 분	전 략 기 술	
차세대인터넷	고속전달망	고속인터넷 네트워킹
	네트워크 서비스	정보보호
	인터넷 전화/회의	전자상거래
	가상교육시스템	인터넷기반 S/W
광통신	개방형 교환 기입자망	광전송 구내망
디지털방송	방송망/서비스 전송/송출	방송신호처리 제작/편집
무선통신	통신단말 기지국/제어국 위성통신	무선시스템 네트워크
S/W	컴포넌트 S/W 정보검색·관리 가상현실 게임	인터페이스 공간정보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PC 서버 PC 및 주변기기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휴대정보단말
부품	평판디스플레이 광저장장치 무선통신	광통신 디지털방송 센서

다. 지원조건

- 융자금리 연 6.5% (중소기업은 연 6.0%)
- 융자기간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범위 소요자금의 80% 이내
- 지원한도
 - 과제당한도 : 20억원 이내
 - 동일인한도 : 50억원 이내

라. 지원중점

- 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수행한 출연 연구개발사업의 후속과제 우선 지원
(예:선도기반 기술개발사업, 우수신기술지정 · 지원사업)
-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 및 부품개발분야 우대지원
- 중소기업 우대지원
- 멀티미디어, S/W 및 IP/CP 산업 관련 기술개발분야 우대지원

2. 멀티미디어산업 지원사업

가. 지원분야

- 멀티미디어관련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멀티미디어분야 창업 중소기업의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 멀티미디어관련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 지원
 - 생산시설, 연구 및 교육시설, 유통시설 등의 공동설치 및 운전자금 지원

나. 지원규모 : 110억원

다.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7.25%

- 융자기간 :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범위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지원한도 : 업체(사업)당 10억원 이내

라. 특기사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경우에는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 시설자금 : 시설도입 확인후 기성고 방식으로 지원
- 운전자금 : 시설자금이 지원되는 업체에 대해 1회전의 소요 운전자금 지원
- IP/CP 산업관련 창업 우선지원

3. 신청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 2000년 5월 2일(화) ~ 2000년 5월 23일(화)

나. 전산접수 및 신청서 교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itarekr> “공지사항”란 참조)

다. 교부 및 접수처(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

4. 기타

- 융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한 전산접수를 꼭 하신 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신청서(부속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신청
- 문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Tel. 042)869-1331~4)

Cyber 전자전시회 (Cyber Electronics Show) 이용안내

우리 진흥회는 우리나라 전자산업 진흥을 위하여 작년도 하반기부터 한국전자전(KES)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전시출품제품 및 업체DB구축하여 금년 5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DB는 400여 전시참가업체 및 10,000여종의 제품정보를 기반으로 한국전자전 참가 해외바이어정보 및 전자전시뉴스 등 수출중심의 무역전시관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바이어 및 국내 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내수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니 회원사의 많은 이용과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Cyber Electronics Show

1. 목적 및 의의

- 한국전자전을 비롯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에서 해외 공동관을 구성하여 전시 참가하는 Comdex Fall, 런던미디어캐스트, 독일의료기기전, 홍콩전자전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참가업체 및 제품을 수집, 신속히 제공
- Cyber Mall을 통한 업체별 정보 및 전시품목 정보를 통하여 수요업체와 공급자간의 실시간 인콰이어리 제공
- 전자·정보산업의 진흥단체로서의 역할 제고

2. 수록자료

구성 메뉴명	내 용	수록건수
News/Inf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전시회DB 관련 공지사항 · 전자·정보통신관련 전문 전시뉴스 · 전시일정 / Biz Info 	800건
Cyber 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전시제품 검색 · 업체별 업체정보 검색 · 인사이어리 	10,000건
해외전시공동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주요 해외 공동관 안내 · 참가업체별 제품검색 · 업체별 응용서비스 	500건
한국전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안내 · 바이어 사전등록 · 참가업체 및 전시품목 검색 등 	500건
우수개발전자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부품 콘테스트 안내 · 전년도 수상제품 모음 · 업체별 검색 등 	150건
바이어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자전 참가업체 바이어 정보 · 해외 공동관 참가 바이어 · Cyber Mall 바이어 	2,800건
전시실황 동영상	· 전시 브리핑, 전시장 전경 등	600초

3. 향후 발전방향

- 2차년도 (2000년), 3차년도 (2001년) 추진계획으로 완전한 가상 전시관 구성을 목표
 - 허브사이트의 형태로 국·내외 전자관련 전시회의 종합전시장으로서의 역할
 - 예산의 최대한 확보 노력(정부자금, 자체자금)
- 해외공동관 운영시 브로셔 배포 및 사이버 시연회 개최
- 한국전자전 운영시 적극적인 홍보
 - 전자전 홈페이지를 Cyber전시운영체제로 병행하여 운영
 - 바이어 등록, 제품등록, 업체정보 등록 등을 가상에서 직접 등록

4. 기존자료 수정 및 신규자료 등록

- 기존 입력자료의 수정 및 신상품에 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관리자 Tool(5월 이후 사용)을 이용하여 직접 오퍼레이션 가능
- 신규/수정자료에 대하여는 5월말까지 관련 자료(브로셔, File)등을 아래의 문의처로 우편 또는 E-Mail로 송부

5. 서비스 URL : <http://www.kes.org>

6.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산정보실
김기정 대리(Tel:508-4512)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전자회관 12층

전자업계「전자상거래 추진 협의회」
참여 요청

우리 진흥회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앞장서고자 그 동안 340개사 전자부품 5만여종을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으로 정보제공하는 「전자부품 정보인터넷 검색시스템(www.electroparts.org)」을 구축해 현재 서비스 중에 있고 또한, 금년에는 정부에서 범 전자산업계를 위한 「전자업계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문서, 전자부품의 명칭, 분류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동 시스템이 완성된 후에도 부품 업계의 지속적인 신제품 정보제공, 수요업계의 이용 서비스확대 등이 뒤따라야 하므로 동 시스템 구축, 운용을 업계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업계간 「전자 상거래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관심 있는 회원사들의 협의회 참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명칭 : 전자상거래(전자업계)추진 협의회
(가칭)

2. 구성 배경 및 목적

-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전자업계의 능동적 대처
 - 지식과 정보가 기업 경쟁력의 원천
 - 가상공간의 활성화
 - 통합과 네트워크의 확산
 - 산업간 M & A 진행

3. 참가대상 : 전자제품 및 부품 등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

4. 기능

-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전자산업계의 대응전략 연구 및 제시
 - 디지털경제의 대응전략 추진
 - 회원사간 공동이익 및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추진
 - 기타 회원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 문의 : 본회 전자상거래팀
(Tel: 565-5803(350~351))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위한 협조 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경제정책조정 회의에서 확정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금결제비율 산정시 어음제도개선 방안에서 도입키로 한 구매자 금융 및 기업구매 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과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

링에 의한 결제액도 현금결제액으로 인정키로 하였는 바, 이러한 결제방식이 적극 활용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어음결제관행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귀사의 협조를 바랍니다.

- 다 음 -

■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4월 1일부터 도입·시행키로 결정
- 인센티브제 내용
 -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수준 결정시기준이 되고 있는 '누적별점'을 감점
 - 감점대상이 되는 현금결제비율 및 감점폭
 - 현금결제비율 60%이상, 80%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 80%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 현금결제비율 산정방식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 \\ (\text{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text{총 하도급대금 결제액} \\ (\text{사건인지일 직전연도 연간결제액})}$$